

의안번호	2124835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3. 10. 16.
추계번호	23F43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허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에 제외하도록 변경	조세지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가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 수입을 받은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PFV는 「상법」 상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으로, 해당 이익준비금은 PFV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부담함
 - * 자본금의 1/2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현행 법상 PFV로부터 주주(법인)가 수취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수입배당금을 주주 단계에서도 과세

- 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규모 및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지급할 배당액·귀속시기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지만, 자료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기획재정부·국세청에 확인 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과 관련된 현황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참고로 「조세지출예산서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 (내용) PFV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표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잠정)	2024(전망)
감면실적	192	521	625	646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